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5. 2. 13.(목) 10:00

#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 
관한 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69호
- 나. 제 출 자 : 윤영희 의원, 장규권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. 23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. 23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.
- 다. 예방 계획의 수립(안 제4조).
- 라.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(안 제5조 ~ 제6조).
- 마. 재정 지원(안 제7조).
- 바.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 ~ 제9조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4조 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.

-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인, 실종 등의 조례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

####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.

#### 3) 예방 계획의 수립(안 제4조).

-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근거함
  1. 실종 예방 대책
  2.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
  3.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  4.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#### 4)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(안 제5조 ~ 제6조).

- 지원대상
  1.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
  2. 단기거주시설,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
  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
- 지원사업
  1.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
  2.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
  3.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
  4.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

5) 재정 지원(안 제7조).

6)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 ~ 제9조).

□ 금천구 발달장애인 현황

장애유형	합계			심한 장애			심하지 않은 장애		
	합계	남성	여성	소계	남성	여성	소계	남성	여성
지적	832	511	321	832	511	321	0	0	0
자폐성	183	158	25	183	158	25	0	0	0
합계	1,015	669	346	1,015	669	346	0	0	0

다. 검토의견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제1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” 고 장애인의 보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본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재발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예방 계획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발달장애인법)

[시행 2024. 6. 14.] [법률 제20095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.

가. 지적장애인: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

나. 자폐성장아인: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·신체표현·자기 조절·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
다.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“보호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의 보호자(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)

나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

다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

라.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(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)

제3조(발달장애인의 권리)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·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.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,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

## □ 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24. 10. 22.] [법률 제20511호, 2024. 10. 22., 타법개정]

**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